각종위원회 규정

2001년 3월 24일 개정 2013년 11월 1일 개정

1.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22조(각종위원회)에 의거한 각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각종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각종위원회의 종류

각종 위원회는 본회의 특정한 업무집행을 위한 심포지움 위원회, 도서출판위원회, 작품전시위 원회 등의 한시적 특별위원회와 학술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학술연구위원회로 구분한다.

3. 각종위원회의 구성

- 1)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업무집행의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필요할 경우, 회장이 활동기간, 조직구성, 운영방법 등 을 집행이사들과 상의하여 설치한다.
- 2) 학술연구위원회는 분야별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다.
- 3) 분야별 연구회는 해당분야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가진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목적, 활동계획, 인적 구성, 해당 연구회의 회칙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연구 회 구성을 승인할 수 있다.
- 4) 전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구회가 승인된 경우, 회장은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4. 각 연구회 회원의 자격

각 연구회의 회원은 원칙적으로 한국조경학회 회원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 비회원을 포함할 수 있다.

5. 각 연구회의 임원선출과 조직의 구성

- 1) 각 연구회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회장, 총무 등의 임원선출과 활동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은 한국조경학회 이사로 보한다.
- 2) 각 연구회의 필요한 조직의 구성과 임원선출은 해당 연구회에서 행한다.
- 3) 각 연구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각 연구회의 의사결정

- 1) 각 연구회의 조직의 구성, 임원선출, 회원의 가입승인, 연구활동 등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각 연구회 회칙을 따른다.
- 2) 각 연구회는 회원의 활동, 출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할 수 있

다. 단, 그 요건과 내용은 해당 연구회 회칙을 따른다.

7. 각 연구회의 활동

해당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 학회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학술활동
- 2) 해당 연구회가 추구하는 각종 학술활동
-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학술활동

8. 재정

각 연구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자체 수입
- 2) 본 학회의 지원금
- 3) 회원의 부담
- 4) 기타의 수입

9. 각 연구회의 의무

각 연구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각 연구회의 예산안을 포함한 연간활동계획 및 결과의 보고
- 2) 해당 연구회의 규정, 조직 및 임원, 회원의 변경사항
- 3) 기타 학회의 건전한 학술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10. 각 연구회 활동의 권고

회장은 각 연구회의 건전한 학술활동을 권고, 조장,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1. 각 연구회의 해산

회장은 각 연구회의 활동이 다음 각 1), 2)호의 경우 그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연구회의 해산에 대하여 그 경위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본래의 연구회의 활동이 본래의 목적에 심하게 일탈할 경우,
- 2) 연구회의 활동이 심히 부진한 경우,
- 3) 연구회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 4) 연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진 해산을 하는 경우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200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개폐한다.